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8세 미만자 여권 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자의 여권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, 여권사무에 있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18세 미만자의 여권 대리 신청시 제출 서류에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삭제하며, 여권발급신청서 내 여권면수 선택란 표기를 26, 58에서 26면, 58면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. 다만 여권 명의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.

서식 제1호 서식 앞쪽의 여권면수 선택란 중 “26”을 “26면”으로 하고, “58”을 “58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)	제6조(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)	제6조(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)		
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내보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· 2. (생략)	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	3. ----- -----	3. ----- -----		
가. · 나. (생략)	가. · 나. (생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		
<u>다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(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		
④ (생략)	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제7조(여권의 수령방법)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. <u>다만, 영 제5조제2</u>	제7조(여권의 수령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	제7조(여권의 수령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		
		<u><단서 삭제></u>		

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.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. 다만 여권 명의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